

협력사 행동방침

 AJ 네트워크

AJ 네트워크는 협력사와 AJ 네트워크간 동반성장의 근간이 되는 준법·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본 행동규범을 제정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AJ 네트워크에 제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기타 거래를 위한 계약을 체결한 협력사들이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협력사는 거래중인 하위 공급망에도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은 인권을 존중하고 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기본 기준을 제시하는 책임감있는 비즈니스 연합(Responsible Business Alliance)의 협력사 행동규범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AJ 네트워크 공급망 관리 정책 및 기준 변경 등에 따라 개정될 수 있습니다.

본 행동규범과 현지 법규상 내용이 상이할 시에는 보다 엄격한 기준이 우선 적용됩니다.

노동 및 인권

자발적 근로: 협력사는 고용 절차의 일부로, 근로조건을 포함한 고용계약서를 모든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강제노동이나 비자발적 노동, 착취 등과 같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는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아동노동 금지: 아동 노동은 제조의 모든 단계에서 배제되어야 합니다. "아동"은 15 세 또는 의무 교육이 끝나는 연령 또는 해당 국가의 최소 취업 연령 중 가장 높은 연령에 미달하는 연령의 모든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로시간 준수: 응급 또는 비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시간은 현지 법률에 규정된 최대 근로 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근로자들에게 매 7 일마다 최소 하루의 휴일을 허용해야 합니다.

임금과 복리후생: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초과근무수당 및 법정수당 관련 법률을 비롯해 모든 급여 관련 법률을 준수해야 합니다. 현지 법에 따라, 근로자의 초과근무수당은 정규 시급보다 높아야 하며, 협력사는 급여 지급시 급여 내역서를 제공하여 근로자가 근로에 대한 보상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인도적 대우: 근로자에 대한 폭력, 성폭력, 성희롱이나 학대, 체벌, 정신적 또는 육체적 강압, 괴롭힘, 공개적 수치심, 폭언을 포함한 일체의 비인간적인 대우가 있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대우를 하겠다는 위협도 일체 없어야 합니다. 협력사는 근로자들의 인도적 대우를 보장하는 방침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합니다.

차별 금지: 협력사는 성별·인종·국적·종교·장애·나이·정치적 견해 등의 이유로 근로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지 법률 및 규정상 또는 작업장 안전을 위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차별적 수단이 될 수 있는 의료검진을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안전보건

산업안전: 근로자가 작업장 내 잠재적 보건 및 안전 위험 요소에 노출되지 않도록 위험 파악. 평가하며, 위험 요소를 제거.감소시키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취합니다. 또한 협력사는 지속적인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잘 관리된 개인 보호 장비를 제공합니다.

비상사태 대비: 협력사는 잠재적인 비상사태 파악.평가를 통해 비상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 사태 발생 시 적절한 대응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인명 피해와 환경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또한 유도등, 화재 감지기.경보기, 소방시설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및 질병: 협력사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와 질병에 대해 예방하고 관리 및 추적하여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A) 근로자 보고장려 B) 상해.질병 사례 분류 및 기록 C)필요 의료 처치 제공 D)사례 조사 및 원인 제거를 위한 시정 조치 시행 E)업무복귀 지원 규정 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전 보건 커뮤니케이션: 작업 현장 내 근로자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 보건 교육을 실시하고, 근로자가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안전보건 정보를 적절히 게시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건강 및 안전 우려 사항을 자유롭게 제기할 수 있도록 장려해야 합니다.

환경

환경 허가 및 보고: 협력사는 기업 운영 상 요구되는 모든 환경관련 허가(예: 배출량 모니터링) 및 등록사항을 취득하고 현행 상태로 유지하며, 운영 및 보고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오염 방지 및 자원 절감: 협력사는 배출가스, 폐수를 포함하는 모든 폐기물들은 생산, 유지 및 시설 공정의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해 최소화합니다. 또한 프로세스 개선, 재료 대체, 재사용/활용, 자원보존을 통해 자원사용량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유해 물질: 협력사는 유출시 위험을 초래하는 화학 물질, 폐기물 및 기타 물질의 안전한 취급과 이동, 보관, 사용, 재사용/활용 및 폐기를 위해 노력하며, 해당 물질을 라벨로 표기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고형 폐기물/폐수: 협력사는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폐수의 특성을 파악.관리하고 법규에 따라 배출하며,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대기 배출: 협력사는 공정상 생성되는 휘발성 유기 화합물, 미세먼지, 오존파괴물질 및 연소부산물의 특성을 파악.관리하고 법규에 따라 배출하며, 배출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에너지 소비와 온실가스 배출: 협력사는 에너지 효율 제고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 및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기업 윤리

사업 청렴성: 협력사는 AJ 네트워크의 윤리실천지침에 따라 모든 형태의 뇌물, 부패, 갈취 및 횡령을 금지합니다.

부당 이익 금지: 협력사는 뇌물 또는 부당하거나 부적절한 이익을 얻기 위한 기타 수단을 제공해서는 안되며, 반부패 법령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보 공개: 협력사는 모든 업무 거래를 투명하게 실행하며, 인권.안전보건.환경관리 실태, 재무 현황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법규 및 업계 관행에 따라 공개해야 합니다.

지적재산: 협력사는 모든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고 기술.노하우 이전 시 해당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또한 AJ 네트워크의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합니다.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협력사는 공정 거래, 광고 및 경쟁 기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신원 보호 및 보복 금지: 협력사는 직원들이 보복에 대한 두려움 없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익명성이 보장된 신고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협력사는 협력사, 고객사, 소비자 및 임직원을 포함하는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개인 정보 수집, 보관, 처리, 전송 및 공유 시 사생활 보호 및 정보 보안 법규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경영 시스템

기업의 준수 의지 표명: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의 준수 의지 및 지속적인 개선 의지를 문서로 표명하고, 이를 직원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리스크 평가 및 관리: 협력사는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준법, 환경, 안전보건, 노동 관행 및 윤리 관련 잠재 리스크 파악을 위해 노력하며, 리스크 관리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합니다.

교육 및 의사소통: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과 법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관리자.근로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합니다.

근로자 피드백 참여 및 고충 처리: 협력사는 본 행동규범에서 취급하는 관행 및 조건에 대한 근로자의 이해도를 평가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이나 위반 사항을 취합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보복의 우려 없이 고충과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정 조치 절차: 내외부 평가 및 점검, 조사, 검토를 통해 확인된 결함 사항을 적시에 시정하는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문서화 및 기록: 문서와 기록의 작성, 유지에 있어 관련 규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협력사의 책임: 본 행동규범의 요구 사항을 하위 협력사에 전달하고 본 행동규범의 내용, 법률 및 규제 요건, 사회적 책임의 요구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개선 유도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